

충주시 동 및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0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이류면(利柳面)은 의안면(利安面)+유등면(柳等面)으로 면명칭의 역사적·지역적 대표성 결여
- 또한 이류(두번째)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 폐배의식을 야기시켜 면명칭변경에 대한 지역민의 진정·견의가 수년간 지속
- 면명칭변경에 대한 지역민의 숙원(宿願)을 해소하고, 첨단산업단지·기업도시 준공에 따라 서충주지역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지역현황에 걸맞은 신명칭(新名稱)으로 개명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- 공법관계에 있어서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로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정비.

2. 주요내용

- 충주시 이류면(利柳面)을 대소원면(大召院面)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4조2 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나.예산조치 : 8,738천원 확보 (2011년 1회 추경)

다.합의 : 해당없음

라.기타

(1) 입법예고(2011.8.27~9.15)결과 : 의견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대상, 부폐영향평가 : 해당없음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 동 및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동 및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의 읍면명란의 “이류면”을 “대소원면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충주시 읍·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이류복지회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번호	회관명	위치	비고
1	대소원복지회관	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로 137	

②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표중 이류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무소명	위치
대소원면	충주시 대소원면 대춘1길 29

③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중 충주시 보건소 이류보건지소란 및 매현보건진료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충주시 보건소 대소원보건지소	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	대소원면 일원
매현보건진료소	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3	매산, 수현, 탄동, 소용, 월은, 수주, 팔봉

④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이류면”을 “대소원면”으로 한다.

⑤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이류면”을 “대소원면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구분란중 “이류면”을 “대소원면”으로 한다.

⑥ 충주시 리·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읍면명란중 “이류면”을 “대소원면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읍·면란중 “이류면”을 “대소원면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2] 충주시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			[별표2] 충주시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		
읍면명	리명칭	구역	읍면명	리명칭	구역
<u>이류면</u>	대소리	대소리 일원	<u>대소월면</u>	-----	-----
	금곡리	금곡리 일원		-----	-----
	장성리	장성리 일원		-----	-----
	만정리	만정리 일원		-----	-----
	두정리	두정리 일원		-----	-----
	탄용리	탄용리 일원		-----	-----
	매현리	매현리 일원		-----	-----
	문주리	문주리 일원		-----	-----
	검단리	검단리 일원		-----	-----
	완오리	완오리 일원		-----	-----
	본 리	본 리 일원		-----	-----
	영평리	영평리 일원		-----	-----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